

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(종료) 통지서

환자	성명		성별	☐ 남 ☐ 여
	지급 의사 통지 번호			
지급 의사 철회(종료) 사유				
지급 의사 철회(종료)일		년 월 일		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2조제5항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, 제11조의2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6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(종료)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보험회사 · 공제사업자 인

○○ 의료기관 / ○○○ 귀하